

# 정 정 신 고 (보고)

2009년 10월 12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4월 16일
3. 정정사유 :
  - 기재사항 정정(종류 C-F 수익증권 추가)
  -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(2009년 7월 1일 시행) 사항 반영 등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(추가)	종류C-F : 17236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③	4호 신설	종류C-F수익증권 :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법 제 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 투자기구를 포함한다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	4호 신설	종류C-F수익증권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2. 나.	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	삭제
3. 가.	(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	삭제
제39조(투자신탁보수) ③	4호 신설	종류C-F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8.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3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4

제40조(판매수수료) ②	4호 신설	종류C-F수익증권 : 없음
제41조(환매수수료) ②	4호 신설	종류C-F 수익증권 가.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
부칙	신설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